

<붙임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1. 정관변경사유

당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15에 따라 2020년 12월 03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등록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.

2. 주요 변경내용

조 문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목적)	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. 투자자문업 1. 경영컨설팅 1. 국내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, 연구, 분석 및 용역 제공업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업 1.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	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. 투자자문업 1. 경영참여형 사모집합기구(PEF)의 업무집행사원(GP)으로서의 업무 1. 경영컨설팅 1. 국내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, 연구, 분석 및 용역 제공업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업 1.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

■ 첨부서류

1.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
2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
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, 12층(삼성동, 한센관타워)

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준 기

